

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
일부개정법률안
(김성원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1701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9. 30.

발 의 자 : 김성원 · 김선교 · 박성훈
박충권 · 김종양 · 김용태
송석준 · 유용원 · 구자근
서지영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중견기업의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, 중견기업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원활하게 성장할 수 있는 선순환 기업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.

그런데 중견기업이 기업규모의 확대에 따라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 중견기업을 위한 각종 시책 및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데, 이는 해당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투자 확대에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중견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간은 중견기업으로 간주하는 ‘중견기업 졸업유예 제도’를 도입함으로써 기업의 성장에 따른 제도적 부담을 완화하고 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

것임(안 제2조의2 신설 등).

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조의2(중견기업 인정의 특례) 중견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간은 제2조에도 불구하고 중견기업으로 본다. 다만, 합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25조의2제1항제2호 중 “경우”를 “경우(제2조의2에 따라 중견기업으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)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중견기업 인정에 관한 적용례) 제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u><신설></u> 제25조의2(중견기업 확인의 취소)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중견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5조제2항에 따른 확인을 취소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확인을 취소하여야 한다. 1. (생략) 2.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게 된 <u>경우</u>	<u>제2조의2(중견기업 인정의 특례)</u> <u>중견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간은 제2조에도 불구하고 중견기업으로 본다. 다만, 합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u> 제25조의2(중견기업 확인의 취소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1. (현행과 같음) 2. ----- ----- --<u>경우(제2조의2에 따라 중견기업으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</u>

② (생 략)	<u>다</u>) ② (현행과 같음)
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